

### 요 약

2021년에 총 1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음. 이 중에서 비대면 해지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되었음. 나머지 14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의료보험 연계,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 등이 있음

- 2021년에 총 1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며, 이 중 1건이 처리되었고, 나머지 14건은 계류 중임
  -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김한정 의원안, 제2107671호)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되었음
    - 원래 보험업법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른바 “비대면 해지”)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비대면 해지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허용하고 있었음
    - 이에 대해, 보험계약자의 사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본인임이 확인될 때에는 비대면 해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임
    -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대면 방식의 보험계약 해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최근의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해당 법안은 2021. 8. 17. 공포되어 2022. 2. 18.부터 시행될 예정임
  - 그 외에 공·사의료보험 연계,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 등에 관한 보험업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음
    - 이하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4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정책의 연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됨(정부안, 제2112614호)
  - 실손의료보험 정책과 건강보험 정책을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협의·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실손의료보험 및 건강보험 운영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실손의료보험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건강보험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각각 보험업법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sup>1)</sup>을 발의한 것임

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제2112615호)

- 예를 들어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공단,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개정안은 공·사의료보험을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가 타당하나, 다만 공·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의 설치,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 등이 아니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sup>2)</sup>

○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서류의 전자적 전송 요청(이른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에 관한 개정안 2건이 발의됨(김병욱 의원안, 제2109414호 및 정청래 의원안, 제2109937호)<sup>3)</sup>

-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계약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는 것임
  - 이를 위하여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전문중계기관<sup>4)</sup>에 위탁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에서의 소비자 편의 증진 및 보험금 지급 행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요양기관에 대한 의무 부과와 부당성 및 환자의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우려를 이유로 한 반대 입장이 함께 제기되고 있음
  -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간소화되는 경우 보험금 청구 절차에서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보험금 청구 포기 사례를 줄일 수 있으며,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보험금 지급 소요기간 단축 및 보험금 지급행정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음
  - 반면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인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에는 환자의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가 포함되는데 해당 서류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해당 정보가 보험금 지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sup>5)</sup>

○ 전자금융업자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됨(성일종 의원안, 제2109862호)

-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업법에서 명시적으로 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은행, 상호저축은행, 투자매매업자 등)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금융기관은 보험대리점이 될 수 없음
  - 전자금융업자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보험대리점 등록이 금지됨<sup>6)</sup>

2)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2021. 11)

3)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하여는 2020년에도 3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윤창현 의원안, 전재수 의원안, 고용진 의원안), 현재 국회에 총 5건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음

4) 김병욱 의원안에서는 전문중계기관, 정청래 의원안에서는 심평원으로 규정함

5)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2021. 6)

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호의 기관이 금융기관에 해당하고, 여기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이 포함됨. 다만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됨

-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임
  - 은행 등 대표적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하면서 오히려 은행 등보다 금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약한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보험대리점 등록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보이며,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 비대면·디지털 거래에 대한 소비자 수요에 부합하고 보험 가입 시 소비자의 편의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함에 있어서는 그 영업행위 등에 어떠한 규제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임<sup>7)</sup>
  - 현재 개정안은 전자금융업자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어서 그대로 개정하는 경우 방카슈랑스 규제가 적용되는데(모집 대상 보험상품의 범위, 모집 방법, 모집인 수 등), 전자금융업자 보험대리점에게 방카슈랑스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 검토해야 할 것임
  - 또한 빅테크 기업의 경우 우월적 지위 남용 우려 등을 고려한 새로운 영업행위 규제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수 있겠음

○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시 보험금 재산정 및 차액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됨 (송재호 의원안, 제2108225호)

-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기초서류에 따른 적정보험금 지급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에 따른 적정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재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되, 재산정한 보험금이 지급보험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임
- 개정안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행정 제재를 받은 사실만으로 바로 민사상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본건과 같이 보험업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할 것임
  - 만약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위반하여 보험금을 부지급·과소지급했다는 것이 완전히 명백한 경우라면, 보험계약자가 소송 등의 후속 절차 없이 적정보험금을 쉽고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약관의 해석이나 보험금 산정에 있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특히 이와 관련하여 민사 분쟁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에 민사상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며 보험회사의 재판청구권 침해 등의 우려도 있음<sup>8)</sup>

○ 보험회사의 자기손해사정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됨(전재수 의원안, 제2108659호)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손해사정업무를 위탁(이른바 "자기손해사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만 손해사정업무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비율 내에서만 자기손해사정을 허용하는 내용임

7)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2021. 8)

8)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2021. 4)

-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업무 수행을 위한 취지이기는 하나, 개정안과 같이 자기손해사정을 제한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본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겠음
  -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이라는 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절차인데, 이러한 손해사정업무를 보험회사가 스스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자회사에게 위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을 것임<sup>9)</sup>

○ 보험협회가 민원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됨(김한정 의원안, 제2109389호)

- 현재 금융감독원이 보험 관련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을 담당하고 있으나 인력 제한 등으로 처리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보험협회에 민원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험 관련 민원·분쟁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임
- 비교적 단순한 민원·분쟁의 처리가 외부로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민원·분쟁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보험협회에서 민원·분쟁을 처리하는 경우 공정성 확보 방안, 보험협회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분쟁의 범위 등에 대해 사전 검토가 필요할 수 있겠음

○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됨

- 보험업법상 제3보험상품의 담보 범위에 ‘동물에 발생한 사고’를 추가하고 동물보험을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에 포함시키는 내용(김병욱 의원안, 제2107475호)
- IFRS17 및 K-ICS 시행에 대비하여 보험회사가 선제적인 자본 확충을 할 수 있도록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홍성국 의원안, 제2111600호)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기간 중에 보험회사에 보험안내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정문 의원안, 제2110853호)
- 보험업법상 자기계약 금지 규제를 개인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또는 법인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전·현직 임직원인 경우 등에도 적용하는 내용(김병욱 의원안, 제2109578호)
- 보험업법상 고객 응대 직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고객 응대 시 고객에게 직원 보호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배진교 의원안, 제2109780호)
-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도 금지하는 내용(이학영 의원안, 제2108140호)
- 현재 금융감독원장이 조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제재·징계 중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기관경고,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직원에 대한 면직·정직·감봉의 요구에 대한 권한을 금융위원회가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윤창현 의원안, 제2112783호)

9)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2021. 6)

〈표 1〉 보험업법 개정안 목록

번호	의안번호	의안명(대표발의자)	제안일자	주요 내용	진행 상황
1	210747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2021. 1. 19	제3보험에 동물보험 추가	소관위 심사
2	210767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2021. 1. 27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 요건 완화	공포
3	210814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2021. 2. 16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대상 확대	소관위 심사
4	210822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2021. 2. 22	기초서류 위반 시 보험금 재산정·환급 의무화	소관위 심사
5	210865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2021. 3. 9	보험회사의 자기손해사정 제한	소관위 심사
6	210938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2021. 4. 9	협회의 민원처리 및 분쟁 자율조정 허용	소관위 심사
7	210941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2021. 4. 12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소관위 심사
8	210957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2021. 4. 19	자기계약 규제 범위 확대	소관위 심사
9	210978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2021. 4. 28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강화	소관위 심사
10	210986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2021. 5. 3	전자금융업자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록 허용	소관위 심사
11	210993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2021. 5. 7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소관위 심사
12	211085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2021. 6. 17	보험계약기간 중 보험안내자료 제공 의무화	소관위 심사
13	211160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2021. 7. 20	보험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	소관위 심사
14	211261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1. 9. 16	공·사의료보험 정책 연계	소관위 심사
15	211278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2021. 10. 5	보험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 권한 조정	소관위 접수